

# 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인사262- 847	전결규정 (전화번호 725-5453)	조항 전결사항
처리기간	84. 7.	시장	1545
시행일자	84. 7.	 <span style="font-size: 2em; margin-left: 10px;">84.7.21</span>	
보존연한		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order-radius: 50%; padding: 2px 5px;">경재 84.7.21</span>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order-radius: 50%; padding: 2px 5px;">시장 84.7.21</span>	
보 조 기 부	부시장 내무국장 인사과장	 <span style="font-size: 2em; margin-left: 10px;">84.7.21</span>	
기안책임자	원세운 84. 7.	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order-radius: 50%; padding: 2px 5px;">법무 담당관 설사관</span>	
경 우		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order-radius: 50%; padding: 2px 5px;">공고일 84.7.21</span>	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order-radius: 50%; padding: 2px 5px;">점검 84.7.21</span>
수 신	각안참조	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order-radius: 50%; padding: 2px 5px;">공고일 84.7.21</span>	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order-radius: 50%; padding: 2px 5px;">점검 84.7.21</span>
참 조		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order-radius: 50%; padding: 2px 5px;">인</span>	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order-radius: 50%; padding: 2px 5px;">체</span>
제 도	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공고		
제 1 안			
수 신	내부결재		
제 2 동 간	<p>1.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84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별첨 공고문과 같이 공고하고 별안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.</p> <p>2. 공고문안 : 별첨 참조</p> <p>3. 공고일 : 1984. 7. 21.</p> <p>4. 대상인원 : 370명</p> <p>5. 신청기간 : 1984.8.20 - 1984.9.3 (15일간)</p>		
첨부	1.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공고문 1부. 풀.		
제 2 안	10		

1984. 12. 18. 11:00

정직 질서 창조

1.500,000원

수 신 수신처 참조

제 목 동 건

1.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
1984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 
별첨 공고문자 같이 공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고,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  
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자세아니 수당지급 대상자종 회망자는 한 사람도 빠짐  
없이 신청도록 할것.

가. 대상자 : 2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과

소방질감이하의 소방공무원

1. 5급 이상 : 1924.7.1~1928.6.30. 출생자

(여절의 경우 1933.6.30까지 포함)

2. 5급 이하 : 1930.7.1~1934.6.30. 출생자

(여절의 경우 1939.6.30까지 포함)

나. 신청기간 : 1984.8.20 ~ 1984.9.3 (15일간)

다. 작성요령

1) 근수년수 : 수당신청 개시일 기준

2) 징년일 : 6월말(당해년도 7.1~6.30까지 출생자)

12월말(당해년도 7.1~12.31까지 출생자)

3) 징년잔여기간 : 명예퇴직 지급신청 개시일부터 징년일

4) 퇴직하고자 하는 시기 : 결정통지일부터 30일 이내

5) 수당 청구액 산출내역

○ 일반퇴직 : 퇴직월봉급액 × 1/2 × 잔여월수

○ 상병퇴직 : 퇴직월봉급액 × 1/2 × 지급규정 배수

6) 징년잔여기간 계산 : 15일 이상은 1월, 15일 미만은

기산하지 않는다. 상병퇴직자는 6월 이상은 1년, 6월 미만은 기산하지 않는다.

첨부 : 1.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공고문 1부.

2. 수당지급 신청서 1부. 끝.

수신처 : 시산하 전기관

제 3 안

수 신 공 보 관



발신 : 내무국장

제 목 시보 개재 의뢰

1.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정 제5조에 의하여 1984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에 관한 공고를 별첨 공고문과 같이 시보에 개재로자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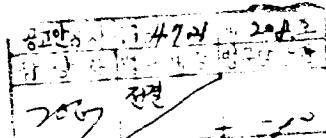
가. 공 고 일 : 1984. 7. 21.

나. 공 고 문 : 별첨 참조

첨부 : 1.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공고문 1부. 끝.



고 문 (안)



서울특별시 공고

제 호

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공고

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정 제5조에 의하여 1984년도 하반기  
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84. 7. 21.

서 A 部 事 장



1. 수당지급 신청 대상자

공급이라 일컬어 및 지급된 지방공무원과 소방정감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 
수당 지급 조건을 현재 10년이상을 소속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 
는 자

나. 직년퇴직기준 1년 이상 10년이내에 직전 퇴직하는 자

다. 정년 또는 부양으로 인하여 직전 퇴직하는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  
30일 이내에 퇴직하는 자

2. 수당 지급대수 인원 : 379명

3. 수당지급 기간

나. 신청기간: 1984. 8. 20 ~ 1984. 9. 3 ( 15일간 )

다. 신청장자: 수당 지급 회의사(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 
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을 받은 후 시장에게 제출한다 )

4. 수당지급 대상자의 짐사결정 및 지급

서울특별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지급 신청서를 받은날로부터  
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짐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고, 결정일로부터  
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급한다

### 5. 수당자급 대상자의 사직 제출

봉지를 받은 수당 자급 대상자는 그 봉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6. 기타수당

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정을 참고하기 바람.

